

선정대표자 선정서

접수번호		접수일		
사건번호		※ 이미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.		
청구인		○○○외 ○명		
피청구인				
선정대표자	1.	성명		
		주소		
	2.	성명		
		주소		
	3.	성명		
		주소		

「행정심판법」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선정대표자를 선정합니다.

년 월 일

선정인 (서명 또는 인)

○○행정심판위원회 귀중

첨부서류	없음	수수료 없음
------	----	-----------

유의사항

- 여러 명의 청구인이 공동으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인들 중에서 3명 이하의 선정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고, 선정대표자가 선정되면 다른 청구인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해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.
- 선정대표자는 다른 청구인들을 위해 그 사건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심판청구를 취하하려면 다른 청구인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, 이 경우 동의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해야 합니다.

작성방법

- 청구인란은 행정심판을 청구한 청구인의 수에 맞게 작성합니다.
- 선정대표자란은 2명 이하의 선정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원수만큼만 작성합니다.
- 선정인은 선정대표자를 제외한 청구인을 말하며, 모든 선정인이 성명을 적고 서명해야 합니다. 적을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합니다.

처리 절차

선정서 작성



접수

선정인

○○행정심판위원회